15 (제223회 - 제2차 부록)

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제정이유

○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나. 개관 및 휴관, 관람시간 지정(안 제6조, 제7조)
다. 가야산역사신화공원 관람료 징수(안 제8조)
라. 편의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나. 예산조치 : 연 1억원 정도
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15365('17. 3.13.)〕
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2163('17. 3. 6.)〕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기간 : '17. 2.23.~'17. 3.15.〕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(이하 “공원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공원은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21 일원에 위치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공원의 시설”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.
2. “어린이”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인 사람을 말한다.
3. “청소년”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
4. “군인”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(의무경찰, 교도경비대 등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5. “일반”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소년,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.
6. “단체”라 함은 유료입장객 중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

제2장 공원의 운영 및 관리

제4조(운영 및 관리) 공원은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관리한다. 다만,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야산야생화식물원과 통합하여 운영·관리할 수 있다.

제5조(업무) 공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원 내에 전시 및 시설관리
2. 그 밖에 공원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
제6조(개관 및 휴관) 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.

1. 1월 1일
2. 설날 및 추석 당일
3. 매주 월요일(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 날)
4. 공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·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5. 그 밖에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날

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공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람시간) 관람시간은 10:00~17:00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관람료) ①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관람권은 일반, 군인, 청소년 및 어린이의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권한다.

③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원과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을 관람할 수 있다.

제9조(관람료 면제 및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

1.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3.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
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
7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9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10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11. 국군의 날에 관람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관람하는 어린이
12. 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
13.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, 경상북도 또는 성주군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감면을 요구하는 사람
2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·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을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행위의 제한) 군수는 공원 내 전시물의 보호,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리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음주, 흡연, 취사, 노숙, 영리행위
2. 개,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. 다만,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.
3.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
4.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
5.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
6.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・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
7.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
8. 그 밖에 타인의 관람에 피해를 주는 행위

제11조(변상조치)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실비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제12조(편의시설 등)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
1. 휴게음식점 및 매점
2. 기념품 판매점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「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3장 보칙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입장료)”를 “(입장 및 입장료 등)”으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식물원 입장 및 입장료 등(입장료 면제·감면을 포함한다)에 관련된 사항은 「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 및 별표를 삭제한다.

[별표]

관람료(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일 반		청소년 및 군인		어 린 이		비 고
개인	단체	개인	단체	개인	단체	
2,000	1,500	1,500	1,000	1,000	800	

※ 가야산역사신화공원과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통합 관람료임.